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참여자를 위한 자주하는 질문집

2020. 7. 30.

자주하는 질문집은 법무부에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등 사회통합교육 참여자들이 교육 참여 및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법령 및 고시, 지침 등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무 부
이 민 통 합 과

- 목 차 -

I.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이용하기

1.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회원가입	5
2.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재설정	6
3. 여권번호 본인인증 오류	7
4.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정방법	7
5. 단기체류자에서 등록외국인으로 변경	8
6. 평가 홈페이지 가입 의무	8
7. 귀화신청자 인증	9

II.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알아보기

1.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11
2.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구성	11
3.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구성	12
4.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12
5.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	12

III.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참여하기

1. 평가 신청 절차	13
2. 사전평가 정원 비율	14
3. 평가 일정	14
4. 평가 결과 확인	15
5. 교육 중 귀화허가 신청한 사람	16

6. 평가 홈페이지 비밀번호 설정	17
7. 평가 홈페이지 비밀번호 연동 여부	17
8. 평가 장소 확인	18
9. 평가 수수료	18
10. 평가 샘플문제	19
11. 이수완료자의 종합평가 재응시	20
12. 평가 대비 교재	20

IV.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하기

1. 수강신청 절차	21
2. 온라인 화상교육	23
3. 체류지 관할 외 수강신청	23
4. 연계를 통한 단계배정	24
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합격증 출력방법	24
6.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25
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완료까지 최단기간	26
8. 이수정지나 제적 후 교육 참여	26
9. 주말반 수업	27
10. '20.9.1.부터 4, 5단계 최저 점수제 시행	27
11. 동포 중점 운영기관	29
12.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 교재 변경	29

V.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알아보기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30
2.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회원 가입	30
3.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리 신청 가능 여부	31

4.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31
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혜택	32
6.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구성	33
7.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기관	33
8.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비	33
9.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34
10.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일정	35
1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접수증	35
12.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35
13.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취소방법	36
14.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부부동반	37
1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석	37
16.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방법	37
17.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시간 및 이수증	38
18.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교육 장소 선택	38

Ⅵ.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참여하기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란	39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구성	40
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절차	40
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일정변경 및 취소	43
5. 직장인을 위한 주말 교육과정 운영	45

I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이용하기

1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회원가입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찾기 어려워요.

- 홈페이지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join membership)**’ 메뉴가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중 참여를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메뉴는 총 8개의 언어가 지원됩니다.



2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재설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페이지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로그인(Log in)' 메뉴를 누르시고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 순서	비밀번호 재설정 순서

- 비밀번호 재설정 시 휴대폰번호가 틀려서 재설정이 안된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전화주시거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이하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사회통합정보망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1345 외에도 이민통합지원센터로 전화 요청 후 팩스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이민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알림마당」 - 「FAQ」 게시물 '전국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에서 확인 가능

3 여권번호 본인인증 오류

단기체류자로 회원가입 시 여권번호 인증이 안됩니다.

- 여권을 가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요청하신 후에 팩스로 여권 사본을 송부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해드립니다.

4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정방법

성명, 주소(체류지), 체류자격,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사회통합정보망에서 개인정보 수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만일 주소(체류지)나 체류자격이 변경되었는데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성명, 주소 및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출입국관서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되어 외국인등록 상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후에 반드시 사회통합정보망에도 개인정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주소(체류지)나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수강신청)이 안됩니다.
- 성명, 주소(체류지), 체류자격, 전화번호 수정은 홈페이지 첫 화면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회원상세정보’를 눌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체류지 변경) ‘체류지변경’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출입국관서에 신고된 체류지 주소로 변경됩니다.
 - (성명,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변경’ 버튼을 누르면 출입국관서에 신고된 성명과 체류자격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 (전화번호 수정) ‘핸드폰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수정하고 아래 ‘수정’ 버튼을 누르면 변경됩니다.

5

단기체류자에서 등록외국인으로 변경

단기체류자로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했는데 외국인등록을 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등록외국인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 단기체류자 회원이 외국인등록 후에 등록외국인 또는 거소신고자 회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변경하거나 이민통합지원센터로 전화 요청 후에 팩스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송부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이민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알림마당」 - 「FAQ」 게시글 ‘전국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에서 확인 가능

- 다만, '20. 9월 이후 시스템 개선 예정으로, 개선 이후에는 단기체류자 회원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사회통합정보망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외국인 등록 회원 또는 거소신고자 회원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6

평가 홈페이지 가입 의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보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홈페이지 둘 다 반드시 회원가입해야 하나요?

- '19.1.1.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하고 '평가신청' 메뉴를 통해 연동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에도 회원가입하고 평가신청 및 수수료 결제를 해야 합니다. 두 홈페이지는 하나의 아이디로 연동되기는 하나, 회원가입은 각각 해야 합니다.

7 귀화신청자 인증

귀화허가 신청을 하여,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귀화신청자 인증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사회통합정보망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학사이력조회' 버튼을 누르고 화면 하단의 '귀화신청자 인증'을 누르면 귀화신청여부를 확인하여 반영됩니다.

1

The screenshot shows the Soci-Net homepage with the '마이페이지' (My Page) menu highlighted. Below the menu, there is a section for '귀화신청자 인증' (Naturalization Applicant Authentication) with a button to click.

2

The screenshot shows the '마이페이지' (My Page) section with the '귀화신청자 인증' (Naturalization Applicant Authentication) button highlighted. Below it, there is a section for '학사이력조회' (Academic Record Inquiry) with a button to click.

3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SOCIAL INTEGRATION NETWORK

수강생 상세정보

회원ID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자	국적	한국
핸드폰(SMS)				전화번호			
이메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결혼이민여부	N
국내거주지주소							

수강생상태	회원가입	현재단계	과정신청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신청일	2019.05.18
귀화허가신청 여부	승인	귀화허가신청 일자	2019.05.22
특별배려대상	미수증		

평가이력
교육이력
청강이력
주요학적관리
과거교육이력

과정	운영기관	교육일자	출석 점수	평가 점수	미수 결과	교재 지급
검색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③
귀화신청자 인증
교육확인서 출력
닫기

Ⅱ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알아보기

1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무엇이며,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신청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이민정책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구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수준에 따라 0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단계별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이며, 5단계는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소양에 대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을 교육합니다.

구분 \ 교육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3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구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법무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동시 실시하는 사전 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와 1~3단계 교육 종료 시 운영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단계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평가종류	사전평가	(1~3)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대 상		교육참여 희망자	(1~3)단계 별 교육 수료자	4단계 교육 수료자	5단계 기본,심화 교육 수료자	5단계 심화 교육 수료자

4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 348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20.1.기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현황](#)」에서 운영기관 명과 연락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

교육비가 있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별도의 참가비나 교육비가 없습니다.

Ⅲ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참여하기

1 평가 신청 절차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하고 '평가신청' 메뉴를 누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홈페이지로 자동 연동됩니다. 평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여 평가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알림마당 - 자료실 '평가 신청 안내 매뉴얼' 참조

<평가 신청 안내 매뉴얼>

※ 평가신청 전에, 먼저 사회통합망(www.socinet.go.kr) 가입합니다!

1. 사회통합정보망 로그인 후, 화면의 3번째 그림 클릭!



2. 평가신청화면에서 동의합니다. ☒ 체크 후, 아래 신청 클릭!



→ 동의합니다 체크 후 신청 클릭하면 한국이민재단 평가 홈페이지 연결됨!

3. 한국이민재단 평가 홈페이지(www.kiiptest.org)에서 평가접수가능!

연결된 아래의 화면에서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번호(인증필수),국적등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 (아이디, 이름, 외국인등록번호는 소시넷과 동일함)



(사전평가 신청자)

평가신청 및 접수

평가신청 및 접수

- 평가신청
- 평가결과 조회
- 평가신청서 다운로드

평가신청

평가구분 선택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시험만)	종합평가(사제대)
------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여부

참여	미참여
----	-----

특정채널포함여부

포함	비포함
----	-----

평가항목 선택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	----------------------

다음단계

→ 본인이 선택한 사전·중간·종합평가 시험 종류를 다시 확인 한 후, 평가어를 클릭!

평가구분	평가일자	접수기간
사전평가 (사전)	2019.01.26 (토)	2019.01.02 (일) ~ 2019.01.16 (수)

다음단계

[illegible]

※**환불** : 접수 마감 후, 순차적으로 진행!

- 14 -

3

평가 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일정을 알려주세요.

○ 2020년도 법무부 평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수	사전평가(10차)				중간평가(4차)			종합평가(10차)		
	신청기간	평가	결과발표	동포:그외 정원비율	신청기간	평가	결과발표	신청기간	평가	결과발표
1차	'19.12.24.(화) ~12.30.(월)	1.11.(토)	1.23.(목)	2 : 8	4.21.(화) ~4.27.(월)	5. 9.(토)	5.15.(금)	1.21.(화) ~1.27.(월)	2. 8.(토)	2.14.(금)
2차	'19.12.31.(화) ~'20.1.6.(월)	1.18.(토)	1.31.(금)	5 : 5	6.16.(화) ~6.22.(월)	7. 4.(토)	7.10.(금)	2.18.(화) ~2.24.(월)	3. 7.(토)	3.13.(금)
3차	2. 4.(화) ~2.10.(월)	2.22.(토)	3. 6.(금)	7 : 3	8. 4.(화) ~8.10.(월)	8.22.(토)	8.28.(금)	3.24.(화) ~3.30.(월)	4.11.(토)	4.17.(금)
4차	3. 10.(화) ~3.16.(월)	3.28.(토)	4.10.(금)	7 : 3	12. 1.(화) ~12. 7.(월)	12.19.(토)	12.28.(월)	5. 6.(수) ~5.12.(화)	5.23.(토)	5.29.(금)
5차	4. 7.(화) ~4.13.(월)	4.25.(토)	5. 8.(금)	2 : 8				5.26.(화) ~6. 1.(월)	6.13.(토)	6.19.(금)
6차	6. 2.(화) ~6. 8.(월)	6.20.(토)	7. 3.(금)	7 : 3				6.30.(화) ~7. 6.(월)	7.18.(토)	7.24.(금)
7차	6.23.(화) ~6.29.(월)	7.11.(토)	7.24.(금)	없음				8.18.(화) ~8.24.(월)	9. 6.(일)	9. 11.(금)
8차	7. 7.(화) ~7.13.(월)	7.25.(토)	8. 7.(금)	없음				9. 8.(화) ~9.14.(월)	9.26.(토)	10.8.(목)
9차	7.21.(화) ~7.27.(월)	8. 8.(토)	8.21.(금)	2 : 8				10. 6.(화) ~10.12.(월)	10.24.(토)	10.30.(금)
10차	8.11.(화) ~8.17.(월)	8.29.(토)	9.11.(금)	없음				11. 3.(화) ~11. 9.(월)	11.21.(토)	11.27.(금)
11차	9. 1.(화) ~9. 7.(월)	9.19.(토)	10. 7.(수)	7 : 3				11.24.(화) ~11.30.(월)	12.12.(토)	12.18.(금)
12차	9.29.(화) ~10. 5.(월)	10.17.(토)	10.30.(금)	7 : 3						
13차	10.13.(화) ~10.19.(월)	10.31.(토)	11.13.(금)	없음						
14차	10.27.(화) ~11. 2.(월)	11.14.(토)	11.27.(금)	7 : 3						
15차	11.17.(화) ~11.23.(월)	12. 5.(토)	12.18.(금)	없음						

※ 국내 체류 중인 동포방문(C-3-8) 자격자는 제11차 사전평가(9.19.)부터 참여 가능

4 평가 결과 확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결과발표일 16시 이후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마이페이지'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www.kiiptest.org) '성적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통합정보망 -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상태	이수중	현재 과정 단계	
운영기관		사무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과정신청 > 이수정지신청 > 학시이력조회 > 회원상세정보확인 > 과정신청대행

※ 사전평가 응시자 중 구술시험 3점미만자는 평가접수에 상관없이 0단계로 배정됩니다.

사/전/평/가

평가상태 : 평가완료
평가일자 :
평가접수/결과 :
※ **평가결과 발표일 16시** 접수 및 합격여부가 확정됩니다.
(16시 이전일 경우 미확정 결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세 | 접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 성적조회]

국민연금 한국이민재단 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KIIP 평가안내 평가신청 및 접수 성적조회 마이페이지 알림마당

성적조회

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성적조회

성적증명서 발급

③ 성적조회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영주용)	종합평가(귀화용)
------	------	-----------	-----------

평가명	평가접수번호	평가일자	결과
조회할 성적이 없습니다.			

5 교육 중 귀화허가 신청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에 참여 중입니다. 수업을 듣던 중 귀화 신청을 하여,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고 싶은데 평가 신청이 안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중인 경우 수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업이 끝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거나, 사회통합정보망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수정지 신청하여 이수정지 승인 후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상태	이수중	현재 과정 단계	
운영기관		사무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과정신청](#) | [이수정지신청](#) | [학사이력조회](#) | [회원상세정보확인](#) | [과정신청대행](#)

※ 사전평가 응시자 중 구술시험 3점미만자는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0단계로 배정됩니다.

- 단, 교육 참여자라 하더라도 5단계 전체과정 수료 후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면 귀화용 이수완료되어 귀화 면접심사까지 면제되지만, 교육 수료 전에 귀화허가를 근거로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면 합격하더라도 귀화용 이수완료로 인정되지 않아 귀화 면접심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귀화용 종합평가와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사회통합정보망」 - 「사회통합프로그램」 - 「영주귀화신청안내」 참조해 주세요.

-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허가 신청자가 귀화신청자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평가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귀화신청자 인증을 해주세요.

※ 본 질문집 1-7. '귀화신청자 인증' 참조

6

평가 홈페이지 비밀번호 설정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설정 방법이 사회통합정보망과는 다른가요? 비밀번호 찾기는 어떻게 하나요?

- 「사회통합정보망」 비밀번호는 ‘영문 + 숫자 + 특수문자’의 조합으로 9 ~ 20자리로만 가능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영문 + 숫자 + 특수문자’의 조합으로 8 ~ 16자리로 설정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로그인’ 아래에 있는 ‘비밀번호 찾기’ 메뉴를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에는 로그인이 제한되므로 그 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또한 5회 이상 로그인 실패로 로그인이 제한되면, 평가 시행기관인 한국이민재단(02-2643-2583, 02-2643-2584)으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기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7

평가 홈페이지 비밀번호 연동여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아이디(ID)를 변경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변경되나요?

- 사회통합정보망과 평가 홈페이지의 아이디(ID) 연동은 최초 평가 홈페이지 가입 시에만 적용되므로 평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후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변경된 아이디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평가 홈페이지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8 평가 장소 확인

구체적인 평가장(평가장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또 평가 신청 시 평가장이 일부 지역은 보이지 않는데 마감된 건가요?

- 평가 신청 시에는 평가 지역만 선택할 수 있고 구체적인 평가장은 응시 인원 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응시인원이 마감된 후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평가장은 평가일로부터 3일 전 오후 3시 이후 발송해 드리는 문자메시지와 평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나의 시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평가 신청 절차에서 평가 지역 선택 시에는 접수 가능한 지역만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초과되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9 평가 수수료

평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평가 응시 수수료는 1회당 30,000원입니다.
※ '18.12월까지 귀화신청 접수한 사람이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내 총 3회까지 무료로 응시 가능합니다.

10 평가 샘플문제

평가 샘플문제가 있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샘플문항은 사회통합정보망 '알림마당'의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이수완료자의 종합평가 재응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반복 수료하여 이수완료 하였습니다. 이수완료는 했지만, 종합평가에 합격하기 위해 평가에 응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자와 다르게 종합평가에 불합격했으나 반복 수료에 의해 이수완료한 사람은 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종합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반복수료 이수완료자의 종합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 개정 예정('20. 8월)

12 평가 대비 교재

평가를 대비할만한 교재가 있나요? 또, 사전평가를 위해 대비할만한 수업이 있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중 사전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교육단계 배정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평소 자신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실력으로 응시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수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사전평가를 위한 별도의 교재는 없으나,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므로 0 ~ 5단계까지의 단계별 교재(총 7권)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입은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www.kisf.org) 또는 시중 서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IV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하기

1 수강 신청 절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단계 배정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한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1년에 3학기를 기본으로 운영하되, 지역에 따라서는 2학기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매 학기 시작 전이나 학기 초반에 사회통합정보망 '과정신청' 메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시간, 교육장소, 수업정원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해야 합니다.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학기]

학 기	1학기	2학기
운영기간	4 . 22 . ~ 8 . 16 .	8 . 17 . ~ 12 . 13 .

※ 단,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교육 중단(1~3월)으로 인해 전국 2학기제로 운영

- 수강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학기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수강신청 기간은 출입국관서 관할 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일정은 가까운 운영기관 또는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통합정보망에서의 '과정신청' 메뉴에서는 현재 수강신청기간 내의 수업만 보여지게 되며, 목록에 있더라도 정원이 마감된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각 수업마다 최대 3명까지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취소자가 생기지 않으면 수업 배정을 받을 수 없으며, 대기 신청 중에는 다른 수업의 수강신청을 하실 수 없고 반드시 대기 신청 취소 후에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통합정보망에서의 '과정신청' 메뉴는 다음과 같으며, 과정신청 메뉴에서 '과정신청 매뉴얼'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시작일정

2019.07.30 ~ 2020.02.29

신청일정

SEARCH

과정신청 안내사항

- 신청 시간 : 과정신청은 신청기간 시작일 0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수업 상세정보 확인 : "운영기관명"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수강을 원하는 과정의 "운영기관명"을 클릭하여 수업정보 확인 후 하단의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 신청 상태
 - 신청 시작 전 : 신청기간 시작 전으로 신청 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 신청 인원이 정원 이내여서 과정 신청 가능
 - 대기 가능 : 신청 마감이 된 경우 대기 순번대로 각 수업마다 최대 3명까지 대기신청 가능
 - 수업 시작 전 : 빈 자리가 나면 대기 순번 순서대로 자동으로 신청상태로 바뀜
 - 수업 중 : 수업 시작 20%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고, 과정 배정 전까지의 출석시간은 결석으로 처리

*** 주의 : 대기 신청은 수업 신청이 아닙니다**

 - 신청 마감 : 과정신청과 대기신청 모두 마감되어 신청 불가
- 신청 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과정신청과 대기신청, 과정배정 진행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취소 : 과정신청 또는 대기신청한 과정을 클릭하여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 신청 취소합니다.
- 과정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신청방법 보기](#)

과정정보						신청정보				
운영기관명	주소	과정및단계	과정시간	과정기간	과정상태	신청기간	정원	신청	대기	신청정보 구분
		한국사회의 이해	50	2019. 10. 12~2019. 11. 23	과정시작전	2019.09.20~2019. 10. 10	20	0	0	신청시작전
		한국사회의 이해	50	2019.09.09~2019. 10. 14	과정시작전	2019.08. 19~2019.09.06	20	19	0	신청가능

1. 운영기관명을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

과정

과정명

한국사회의 이해 (토일A반)

강사명

과정기간

신청인원/정원

과정정보

12월 14일 10차 종합평가 응시할 수 있음

신청기간

과정시간

50

과정장소

과정진행

날짜	요일	과정시간	인정시간
2019. 10. 05	토	08:00 - 14:00	5시간
2019. 10. 06	일	09:00 - 14:00	5시간
2019. 10. 12	토	08:00 - 14:00	5시간
2019. 10. 13	일	08:00 - 14:00	5시간
2019. 10. 19	토	08:00 - 14:00	5시간
2019. 10. 20	일	08:00 - 14:00	5시간
2019. 10. 26	토	08:00 - 14:00	5시간
2019. 10. 27	일	09:00 - 14:00	5시간
2019. 11. 02	토	08:00 - 14:00	5시간
2019. 11. 03	일	08:00 - 14:00	5시간

새로고침

신청

목록조회

2. 수업일자 및 시간, 장소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

2 온라인 화상교육

집 근처에 운영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수업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집합교육과 화상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 집합교육은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지역학습관에서 실시되어 직접 출석하여 교육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화상교육은 전문강사와 교육생 간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되므로 수강생은 적정 사양의 PC(노트북), 헤드셋, 웹 카메라, 인터넷 환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상교육은 원거리 거주(격오지), 임신, 출산, 거동불편, 취업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참여자를 신청대상자로 하며 과정신청 기간 내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한국이민재단 온라인 화상교육 담당자 02-2643-8791

○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집합교육을 화상교육*으로 대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시행중인 화상교육은 PC외에 태블릿, 휴대폰으로도 참여 가능

3 체류지 관할 외 수강신청

외국인등록된 체류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만 집에 갑니다. 직장을 다니는 주중에 체류지의 출입국 관할이 아닌 가까운 운영기관에서 수업을 듣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류지 관할 지역 외에 소재하는 운영기관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수강하고자 하는 지역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 연계를 통한 단계배정

토픽 등급 성적표가 있습니다. 사전평가를 받지 않고도 단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배정받는 방법은 크게 사전평가와 사전평가 외 단계배정이 있습니다. 사전평가 외 단계배정 방법으로는 ① 0단계 교육부터 시작,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 ③ 결혼이민사증 연계, ④ 타기관 한국어교육 중급연계, ⑤ 결혼이민자의 여성가족부 정규 한국어교육 단계별 연계*가 있습니다.

* '19.12.31.까지 이수한 자에 한하여 연계신청 가능, '20.12.31.까지 단계별 연계 운영

- ①의 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회원가입 후 '단계배정' 메뉴에서 '0단계부터 시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② ~ ⑤의 방법으로 단계배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알림마당' - '민원서식'에 안내되어있는 신청서류 작성 및 추가 서류(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이수확인서 중 신청하고자 하는 연계신청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단,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메일 접수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이메일 접수처 : 사회통합정보망 '알림마당'-FAQ' 게시판 참조)

- 사전평가 외 연계를 통한 단계배정(② ~ ⑤)은 사회통합정보망 '알림마당' - '민원서식'을 참고해 주세요.

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합격증 출력방법

이수증이나 합격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있나요?

- 사회통합정보망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으며, 이수증과 합격증 모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6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3단계까지 이수했는데, 이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증명 서류에는 중간평가, 종합평가 합격증과 5단계 이수완료자에게 발급되는 이수증 외에도 교육확인서가 있습니다. 교육확인서는 참여자가 교육 참여 중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회통합 정보망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확인서 예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발급번호: KIPEDU- []

인적 사항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	체류자격	[]
	체류지	[]	연락처	[]

교육 사항	교육 배정 단계 :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기본)				
	단계	교육 과정	교육기관	상태	교육인정시간
	3	한국어중급1	[]	이수	총 91시간 (2015.09.01~2015.11.19)
	4	한국어중급2		이수정지	총 57시간 (2016.03.07~2016.05.27)
	4	한국어중급2		이수	총 97시간 (2017.09.05~2017.11.23)
	4	한국어중급2		이수	총 84시간 (2018.03.12~2018.06.15)
	5	한국사회의 이해		이수	총 50시간 (2018.09.04~2018.10.18)
	6	한국사회의 이해(심화)		이수	총 20시간 (2018.10.30~2018.11.08)

[교육 상태 구분]

수료 수료인정 출석시간 충족 (해당 교육을 마친 것은 아님)	이수 평가 합격 또는 반복수료 (평가 불합격자 등)하여 해당 단계 교육을 마침	이수완료 최종 5단계 기보(영주권) 또는 심화(귀화증) 과정을 이수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침
이수중 현재 교육에 참여 중임	이수정지 교육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교육을 중단함	제적 교육 인정시간이 모두 무효처리됨
유급 수료인정 출석시간 불충족 (수료하지 못함)		

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 39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위와 같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최종 이수 상태가 아닌 참여자는 제적될 경우 상기 교육은 모두 무효처리됨

2020년 07월 28일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여수출입국
·외국인사
무소장인인

※ 현재까지의 교육이력 확인이 가능하나, 제적이 되면 제적된 교육 참여 이력은 보이지 않음

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완료까지 최단기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심화과정까지 교육하고 이수완료하기까지 최단 소요기간은 얼마인가요?

- 참여자의 교육 시작단계와 재수강여부, 참여 운영기관이 2학기제인지 3학기제인지 여부, 수업중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지어 답하기는 어려우나, 0단계부터 참여한 이민자가 수업 중단이나 재수강 없이 승급한 경우에 3학기제에서는 약 1년 8개월, 2학기제에서는 약 2년 반 정도 소요되며, 한 단계에서라도 평가에 불합격하여 재수강을 하게 되거나, 이수정지 등으로 수업중단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8 이수정지나 제적 후 교육참여

이수정지를 했는데 다시 수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적이 됐는데 다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수정지 후 다시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정보망에서 과정신청 기간내에 과정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수정지가 해제됩니다. 또한, 이수정지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평가를 다시 응시하여 단계 배정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평가 응시 이전 교육의 이수 및 출석시간 등 교육이력은 무효되며, 사전평가 재응시 결과 현재 단계보다 낮은 단계로 배정되더라도 새로 배정받은 단계가 배정됩니다.
- 제적자는 참여금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금지기간 경과 후 다시 교육에 참여가 가능하며, 해당 단계의 교육이력만 무효된 경우에는 그 단계부터 새로 교육에 참여하고, 모든 교육 및 평가이력이 무효된 경우에는 사전평가 등 단계배정 절차를 거쳐 단계배정 후에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9 주말반 수업

직장을 다니고 있어 주말에만 수업이 가능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은 주중 주간반 뿐만 아니라, 주중 야간반, 주말반 까지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됩니다.

10 '20.9.1.부터 4, 5단계 최저 점수제 시행

2020년 9월 1일부터 최저 점수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 '20.8.31.까지는 4단계와 5단계를 수료하고 중간평가 또는 종합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람이 4단계를 재수료, 5단계를 총 3회 반복수료(1회 수료 → 종합평가 불합격 → 2회 수료 → 종합평가 불합격 → 3회 수료)하면 평가 응시여부나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이수되었으나, '20.9.1.부터는 이 기준이 변경됩니다.
- '20.9.1.부터 변경되는 4, 5단계 최저 점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단계) 1회 수료하고 중간평가에 합격하거나, 불합격 후 동일 단계를 재수료하고 응시한 중간평가에서 최저 점수(40점)을 초과 득점하면 4단계 이수되며, 5단계로 승급
 - (5단계) 기본과정(50시간) 또는 전체과정(기본과정 50시간 → 심화과정 20시간)을 수료하고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거나, 불합격 후 동일 단계인 기본과정 또는 전체과정을 재수료하고 응시한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최저 점수(40점)을 초과 득점하면 5단계 이수

※ 5단계 3회 반복수료 폐지

※ 시행일 관련 주의사항

- ▶ '20.8.31.까지 4단계 이수하지 못한 모든 참여자는 '20.9.1. 이후 변경되는 지침 적용 대상이 됨

[최저 점수제 시행 전·후 변경사항 비교]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4단계 이수 방법	◦ (방법1) 1회 수료 → 중간평가 합격 ◦ (방법2) 1회 수료 → 중간평가 불합격 → 중간평가 재응시하여 합격 ◦ (방법3) 1회 수료 → 중간평가 불합격 → 재수료 → 중간평가 재응시 결과에 관계없이 자동 이수 및 승급 * 중간평가 재응시 의무 아님	◦ (방법1) 1회 수료 → 중간평가 합격 ◦ (방법2) 1회 수료 → 중간평가 불합격 → 중간평가 재응시하여 합격 ◦ (방법3) 1회 수료 → 중간평가 불합격 → 재수료 → 중간평가 재응시하여 최저점수(40점) 초과 득점 시에만 이수 * 반드시 중간평가 재응시하여야 하며, 재응시한 중간평가에 불합격 시 재 수료는 금지되고 최저점수 초과 시 까지 중간평가 재응시만 가능
5단계 이수 방법	◦ (방법1) 1회 수료 → 종합평가 합격 ◦ (방법2) 1회 수료 → 종합평가 불합격 →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합격 ◦ (방법3) 1회 수료 → 종합평가 불합격 → 재수료 → 종합평가 불합격 → 재수료 → 종합평가 재응시 결과에 관계없이 자동 이수완료 * 2회 반복수료 후 종합평가는 의무 아님	◦ (방법1) 1회 수료 → 종합평가 합격 ◦ (방법2) 1회 수료 → 종합평가 불합격 →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합격 ◦ (방법3) 1회 수료 → 종합평가 불합격 → 재수료 →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최저점수(40점) 초과 득점 시에만 이수 * 반드시 종합평가 재응시하여야 하며, 재응시한 종합평가에 불합격 시 재 수료는 금지되고 최저점수 초과 시 까지 종합평가 재응시만 가능

11 동포 중점 운영기관

동포 중점 운영기관은 일반 기관과는 다른 곳인가요? 동포 외의 다른 외국인은 수업을 받을 수 없나요?

- 동포 중점 운영기관은 동포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동포 중점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일반 교육과정반도 함께 운영 가능하므로, 동포가 아닌 외국인도 동포 중점반 이외 수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법무부가 정한 특정 체류자격의 동포(F-4, H-2)만 참여가능한 수업

12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 교재 변경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의 지정 교재가 곧 변경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 2021년 1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재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각 단계별로 한 권인 교재가 주 교재, 익힘책 등으로 다양해지며, 내용도 시대의 변화 및 교육현장의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새 교재는 2020년 12월 말부터 시중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2020년 12월 중 공지하겠습니다.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 무엇이며,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연예인 등 6가지 체류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기간에 다른 참여제한은 없으나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효과를 위해 외국인등록 전 참여가 원칙이며, 국내체류 1년 이하의 입국초기의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회원 가입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이 안 되는데요?

-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에 입국한 기록(단기체류기록)을 활용하여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기록은 한국에 입국한 후 1~2일 뒤에 생성되므로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 1~2일 후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리 신청 가능 여부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 회원 가입 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인 **외국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즉, 한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한 후 결혼 이민자를 대신하여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신청해 줄 수 없습니다.

4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나요?

- 방문취업자격을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연예인 등 일부 체류자격에 대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가 의무화 되어 있고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중도입국자녀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무화대상의 방문취업과 외국인연예인 등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참여 전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경우 체류허가기간이 제한적으로 짧게 부여됩니다.
- 다만, 법무부에서 '19. 8월 발표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에 따라 2019. 10. 1.이후 입국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F-6) 외국인**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7개 국가 국적의 결혼이민자(F-6)가 외국인등록 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등록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할 때까지 결혼이민(F-6) 체류지침에 규정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 또한, 동포방문(C-3-8)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국국적 동포도 의무적으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시행일 : 2020. 7. 1.)
- '14.9.1(신규입국 방문취업 동포 이수 의무화 시행)이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 받았던 사람과 동포기술교육 수료 후 발급받은 방문취업 자격허가추천서(동포교육지원단 발행)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과정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또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민자의 사회통합 및 한국사회 조기적응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체류자격의 외국인등록시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 체류허가시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의무화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교육참여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혜택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언제라도 듣기만 하면 체류기간을 무조건 2년을 받나요?

- 결혼이민(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후 체류기간연장 할 때 입국일로부터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국규제자는 제외)
- 또한, '19. 10. 1.부터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자격변경을 접수한 경우에도 자격변경 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2년의 체류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집니다.

6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구성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총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차시는 체류유형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기초 법·제도, 한국사회 적응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3차시는 체류유형별로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유학생) 성공적인 유학생활동을 위한 조언 등, (결혼이민자) 가족 간 상호이해 등, (중도입국자녀) 학교교육 제도 소개 및 미래 진로 등,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 및 국적취득 요건 등 국내정착 관련 정보 등, (외국인연예인) 인권보호 관련 정보

7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기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체류유형별로 지정한 **전국 289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16개 출입국관서**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 「조기적응프로그램」 - 「일정조회」에서 교육대상, 교육예정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교육이 개설된 교육기관(신청마감 된 교육 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8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비가 있나요?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은 별도의 참가비나 교육비가 없습니다.

9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은 언제 하나요?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 「조기적응프로그램」
- 「일정조회」에서 교육대상, 교육예정일, 관할 출입국관서를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날짜에 개설된 교육(신청마감 된 교육 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확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첨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소시지·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안내 | 귀화대상자 종합평가 신청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신청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평가일정 | 공지사항

초기적응프로그램 일정조회

교육대상: 전체 | 교육예정일: 20190909 ~ 20190930 | 사무소: 남부-SEOUL SOUTHERN IMMIGRATION OFFICE | SEARCH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교육장소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을 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단, 인원초과 시 참여 불가)

100건씩 조회 | 🔍 조회 | [총 17 건]

교육일자	교육시간	사무소	대상자격	교육장소	교육인원	비고
2019.09.10	14:00	남부	결혼이민자	한국이민재단(강의실3)	10	신청마감
2019.09.16	14:00	남부	동포(재입국 또는 자격변경, 중국인)	한국이민재단(강의실3)	45	
2019.09.17	14:00	남부	동포(재입국 또는 자격변경, 중국인)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가산동)	30	

10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일정

조기적응프로그램 전국 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없나요?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 「조기적응프로그램」 - 「일정조회」에서 교육대상, 교육예정일, 관할 출입국관서를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날짜에 개설된 교육(신청마감 된 교육 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회 시 교육대상은 “전체”가 선택되어지나 사무소의 경우는 반드시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1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접수증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시 접수증을 꼭 출력해 가야 하나요? 사진 이미지는 괜찮나요?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꼭 접수증을 출력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참석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지 못한 단기 체류자는 **여권**을,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외국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12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교육 이수증 출력방법 및 이수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클릭하면 참여하신 교육확인이 가능하며 이수증 확인을 클릭하면 이수증이 출력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은 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유효기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취소방법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취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로그인 후 ① 마이페이지를 클릭 후
② 접수번호를 클릭, ③ 접수취소를 클릭하면 교육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IMMIGRATION & SOCIAL INTEGRATION NETWORK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알림마당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국제결혼안내 / 조기적응프로그램

구분	접수일자	접수번호	교육장소	교육예정일	교육시간	이수일자	상태
조기적응프로그램	2019.08.30	TGPH19000864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교육장	2019.09.10	14:00		접수중출력

회원상세정보확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참가 신청

접수번호 [] 접수일자 2019.08.30

인적사항

등록(거소)번호	*****		
성명		체류자격	추정방취(H-2-5)
생년월일		국적	카자흐스탄
여권번호	[]	성별	남
핸드폰		전화번호	
EMAIL	@		
참가사무소 및 일자	교육장소조회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 20190910 14:0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교육장		

본인은 상기 내용이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교육운영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체류관리업무에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위와같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용도에 한하여 사용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수정 접수취소

14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부부동반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받을 때 부부동반 필수사항인가요?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경우 부부동반 참여가 필수사항은 아니며 부부동반 참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 중 부부, 가족 간 상호배려와 이해 및 한국 가정문화와 생활방식이 포함되어 있어 결혼초기 부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조금 늦게 가거나, 조금 일찍 나가도 되나요?

-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은 총 3시간으로 3시간의 교육을 모두 참여해야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교육에 늦으시거나 일찍 나가시는 경우에는 이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하신 교육 일에 3시간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신 교육을 취소하고 참여가 가능한 날짜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16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한가요?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7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시간 및 이수증

교육은 몇 시간 동안 하나요? 이수증은 언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이수증은 교육당일 3시간 교육을 모두 마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장소 선택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경우 관할 운영기관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경우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의 조기적응지원센터에서도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무엇이며, 누가 참여하여야 하나요?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국제결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이하 ‘한국인 배우자’)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관련 법령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 한국인 배우자는 누구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7개 국가* 국민과 결혼하였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다만,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임신·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구성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4개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간	교육내용
1교시	국제결혼 관련 현지국가의 제도·문화·예절정보 등 소개
2교시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3교시	국제결혼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가정 구성원 경험담 소개
4교시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절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 및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 교육은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실시됩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관서별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불가)하며 교육 3일 전 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교육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관서별 일정, 장소 등 세부정보는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 시 거주지역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예 : 주소가 부산인 사람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교육신청 가능), 일정조회 검색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기본정보를 입력 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일정조회 팝업창 활성화됨. 여기서 관할 관서를 선택하고,

- ② 관할 관서를 선택 후 SEARCH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교육일정을 선택할 수 있음

교육예정일자	교육시간	사무소	교육장소	수강인원	신청인원	선택
2019.09.19	13:30	수원	수원출입국 3층 대회의실	60	18	선택
2019.10.10	13:30	수원	수원출입국 3층 대회의실	50	2	선택
2019.10.17	13:30	수원	수원출입국 3층 대회의실	50	0	선택
2019.11.07	13:30	수원	수원출입국 3층 대회의실	50	0	선택
2019.11.21	13:30	수원	수원출입국 3층 대회의실	50	0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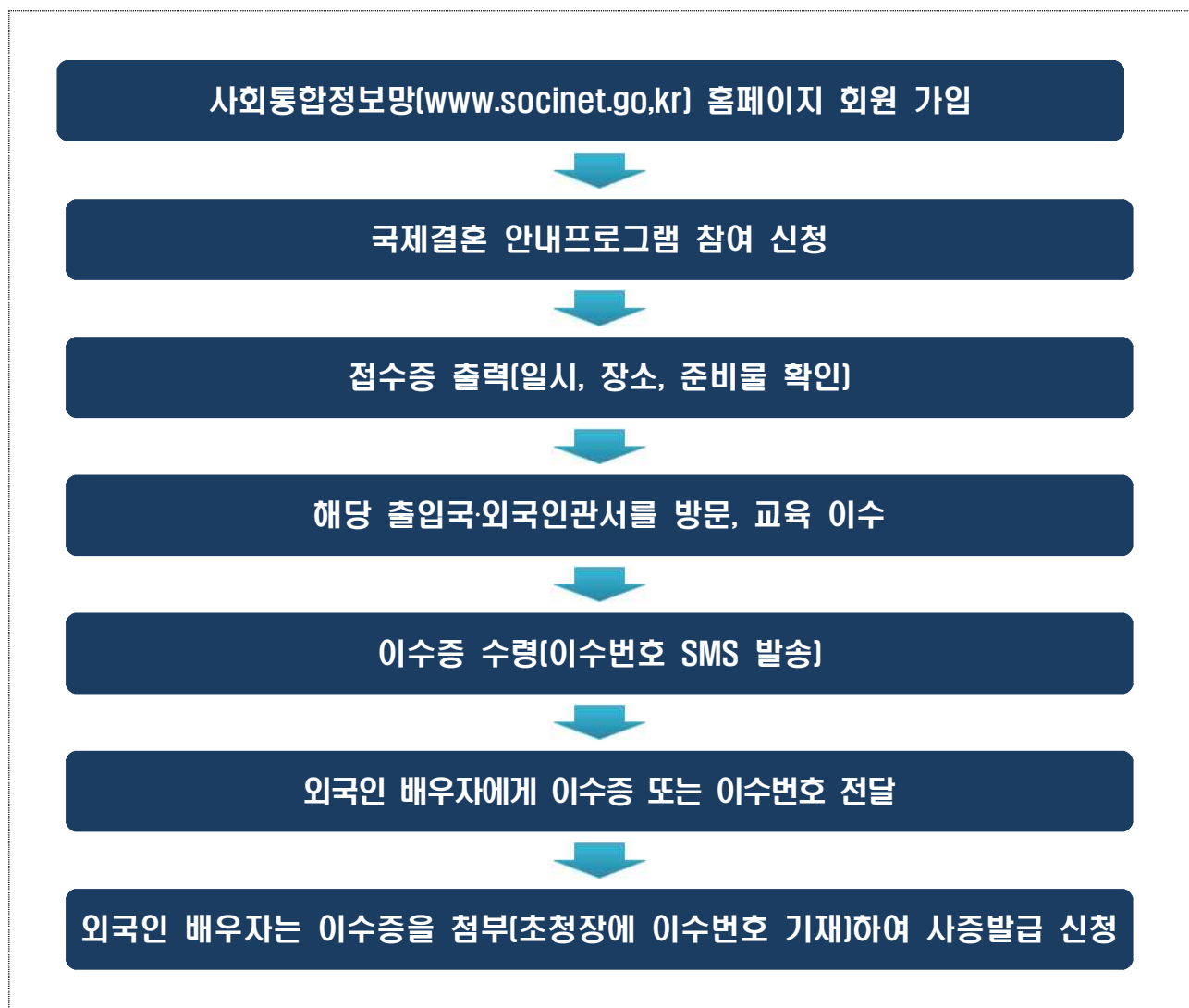
- 교육 참여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접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교육일정이 마무리되면 교육 당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수번호가

기재된 이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증 출력이 어려운 경우 사진촬영 가능. 다만 신분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함

○ 출입국·외국인관서별 연락처 및 주소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신청절차



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일정변경 및 취소

교육신청 후 교육일정 및 취소가 가능한가요?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 후 개인 사정 등으로 교육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마이 페이지」에서 교육신청 내역을 클릭하시면 일정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상세화면

> My Page > My Page

» 마이페이지

국제결혼안내 / 조기적응프로그램

구분	접수일자	접수번호	교육장소	교육예정일	교육시간	미수일자	상태
국제결혼안내	2019.08.29	HSPF19000904	수원출입국 3층 대회의실	2019.09.19	13:30		접수중통역

사회통합프로그램 접수번호 클릭!

상태	회원가입	현재 과정 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신청전
운영기관	미지정	사무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한시이력조회 > 회원상세정보확인 >

▶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

접수번호 HS-PF-19-000904

접수일자 2019.08.29

사무소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EMAIL	
국내거주주소	도로명 : () 지번 : ()

사전제공정보

주거종류	아파트
동거인	☐ 부 또는 모 ☐ 자녀 ☐ 형제자매 ☐ 기타 ☒ 없음
학력	대졸
직업	
혼인경력 (법혼준 기준)	없음
예정(희망)배우자의 국적	☐ 중국 ☐ 중국(조선족) ☐ 베트남 ☐ 필리핀 ☐ 캄보디아 ☐ 몽골 ☐ 우즈베크 ☐ 태국 ☐ 기타 ☒ 아직 모름
예정(희망)배우자와 혼인신고 여부	한국 : ☐ 했음 ☒ 안했음 외국 : ☐ 했음 ☒ 안했음
참가동기	☐ 결혼중개업체 안내 ☒ 법무부 홈페이지 ☐ 친지 등 지인 안내 ☐ 시민단체 안내 ☐ 신문, 방송 등 언론 ☐ 기타
참가사무소 및 일자	교육장소조회 수원출입국·외국인청 20190919 13:30 수원출입국 3층 대회의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법무부의 사증발급 업무 관련 용도에 한해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에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위와같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법무부의 사증발급 업무 관련 용도에 한하여 사용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수정

접수취소

▶ (교육 취소) 화면 아래 '접수취소' 클릭

▶ (교육일정 변경) 화면 중간 '교육장소조회' 클릭 후 일정 변경 후 화면 아래 '수정' 클릭

5

직장인을 위한 주말 교육과정 운영

직장 문제로 주중 일과시간에는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

- 2020년 7월부터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소재지를 기준으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월 1회 이상 주말교육을 실시(제주 제외)하고 있습니다.

권역	출입국·외국인관서
수도권(5)	서울청, 인천청, 서울남부사무소, 양주사무소, 춘천사무소
중부권(3)	수원청, 대전사무소, 청주사무소
전라권(3)	여수사무소, 광주사무소, 전주사무소
경상권(4)	부산청, 대구사무소, 울산사무소, 창원사무소
제주권(1)	제주청

※ 제주청은 분기 1회 실시

- 주말 교육일정*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정에 따라 공지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